

의 안 번 호	제967호
의 결 연 월 일	. . . (제 회)

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자	산업경제위원장
제안연월일	2025년 4월 22일

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67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4월 22일

제안자 : 산업경제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본 조례의 개정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의무와 충청북도
의 관리·감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출연기관의 효율적
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재단의 의무규정 신설하여 책임성 강화(안 제5조)
- 회계연도의 30일 전까지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
하여 법인 회계의 효율성 제고(안 제11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」
- 조례안예고 : 2025. 4. 15. ~ 4. 20.
- 협의 : 과학인재국 미래인재육성과
- 비용추계 : 붙임

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**재사생**”을 “**입사생**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 중 “**재사생**”을 “**입사생**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**필요한**”을 “**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**”으로 한다.

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.

제10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하고,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며, 제5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재단의 의무) ① 재단은 입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재단은 지원받은 금전 및 공유재산 등을 학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.

③ 재단은 위탁운영 기간 중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④ 재단은 이 조례 및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⑤ 재단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.

제12조(검사·감독) ①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를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

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.

제11조의 제목 “(검사·감독 등)”을 “(회계연도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120일전”을 “30일전”으로 한다.

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도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6조(종전의 제15조)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재단은 정관 제정 및 변경, 기구 및 정원의 변동,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, 보수, 재산의 취득·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사항은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학사 <u>재사생</u> 의 면학 및 장학지 원을 위한 법인의 설립과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 <u>입사생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4조(사업) ① 재단은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·2. (생 략) 3. 충청북도학사 재사생의 면학 및 장학지원을 위해 충청북도 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위탁하는 사업 4.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 을 위해 <u>필요한</u> 사업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4조(사업) ①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<u>입사생</u> ----- ----- ----- 4. ----- ----- <u>필요하다고</u> <u>도지사가</u> <u>인정하는</u> ----- ② (현행과 같음) 제5조(재단의 의무) ① 재단은 <u>입</u> <u>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</u> <u>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</u> <u>여야 한다.</u> ② 재단은 <u>지원받은 금전 및 공</u> <u>유재산 등을 학사운영에 직접</u> <u>사용하여야 한다.</u> ③ 재단은 위탁운영 기간 중 시 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<u>선량한</u>

제5조 ~ 제9조 (생략)

제10조(회계연도) 재단의 회계연도는
도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1조(검사·감독 등) ① 도지사는
재단의 업무를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
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
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
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
취할 수 있다.

③ 재단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
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
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매 회계연도 종료 후
2개월 이내에 사업

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④ 재단은 이 조례 및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
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⑤ 재단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
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
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제6조 ~ 제10조 (현행 제5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)

<삭제>

제11조(회계연도 등)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
도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.

<삭제>

② ----- 30일 전

실적 보고서와 수입·지출 결산
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
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12조 ~ 제14조 (생 략)

제15조(운영규정) ① (생 략)

② 재단은 정관 제정 및 변경,
기구 및 정원의 변동, 임직원의
채용과 면직, 보수, 재산의 취득
· 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
사항은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
하여야 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
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
한다.

-----.

제12조(검사·감독) ① 도지사는
재단의 업무를 보고받거나 소속
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
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
결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
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
하거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
취할수 있다.

제13조 ~ 제15조 (현행 제12조부
터 제14조까지와 같음)

제16조(운영규정) ① (현행과 같
음)

② 재단은 정관 제정 및 변경,
기구 및 정원의 변동, 임직원의
채용과 면직, 보수, 재산의 취득
· 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
사항은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
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